

## “분리발주 법제화 조속히 도입해야” 부산시회, 나성린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 방문



코스카 부산광역시회(회장직 무대행 김병철)는 5월 2일 오후 2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나성린 기획재정위원, 새누리당 국토교통위 이승호·김병수 수석전문위원과 시회 및 중앙회 임·직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면담을 실시했다.

시회는 이날 면담에서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없어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등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종합건설업체에게 일괄 발주되고 있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를 전문건설 3개 업종 이상, 공사금액의 40% 이상을 분리해 발주할 수 있는 건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성린 기획재정위원은 시회의 건의에 대해 전문·종합건설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추진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 “외담대 상환청구권 제도 폐지 필요” 시회, 외담대 관련 설문조사 실시

코스카 부산시회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개선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외담대 제도의 상환청구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시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원사의 89.5%가 외담대 상환청구권 제도로 인해 자금회전력이 떨어져 기업신용도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 또 원도급사가 만기일에 미상환했을 시 하도급업자에게 최종 상환처리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대형건설업체들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하도급사들의 연쇄부도 공포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시회는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건설업체의 은행별 외상매출채권 발행 한도와 잔액을 공유하도록 하며 외담대 상환의무자를 하도급자가 아닌 원도급자의 대표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한편 외담대 상환청구권 폐지에 반대하는 10.5%의 응답자들은 이 제도 폐지 시 어음의 현금화가 어렵고 하도급대금 수령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외담대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만기 미결제 시 금융·행정적 제재 강화’(57.1%)를 가장 많이 들었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율 제도 등 실효성 강화’, ‘외담대 발행자격 강화’가 각각 14.3%로 그 뒤를 이었으며 그의 ‘하도급 지급보증서 미발급 시 입찰제재 등 보증서 발급 강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 “철도·궤도 하자보수 규정 현행 유지” 시회, 개정안 반대 서명서 제출

코스카 부산시회가 철도·궤도공사의 하자담보 책임 일부 면제 규정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회원사들의 반대 서명서를 중앙회를 통해 제출했다. 하자책임 면제 규정이 삭제되면 5년의 하자담보 책임이 전면 적용되어 업계의 하자보수보증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시회는 현행 궤도용접 및 콘크리트직결도상 궤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궤도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있는 현행 국가계약법령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특히 자갈궤도의 경우 침묵과 레일을 조립한 궤광을 얹어놓은 구조물이므로 동적인 열차하중은 물론 기온과 눈·비 등 환경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어 완공과 동시에 변형이 진행된다.

시회는 이같은 변형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만큼 하자가 아닌 유지보수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회 관계자는 “건설 후 열차 운행 시 변형이 일어나기 마련인 자갈궤도에도 5년의 하자담보를 부과하는 것은 시공업체에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처사”라며 “노반구조물의 지지력을 강화하고 궤도 구성재료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유지보수를 강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재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 “전문업계 이익을 합리적으로 대변하는 연구원 지향”



노재화 원장은 1978년 제14회 기술고시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행정가의 길을 걸었다. 건설교통부 경인운하과장, 수자원정책과장, 한강홍수통제소장,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을 거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32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노 원장은 2011년 제3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에 취임하여 전문건설업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현재도 국토교통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통령 표창, 녹조근정훈장, 건설의 날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 인터뷰 전문 3면

## 청렴계약서에 하도급 위반행위 금지도 포함해야 부산시회, 국가계약법 개정(안) 의견 제출

코스카 부산시회는 지난 3월 입법예고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청렴계약서에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포함시키는 등의 개선 의견을 중앙회를 통해 제출했다.

개정안은 입찰참가 등록 시 금품 향응 및 담합 금지 등에 대한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위반 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회는 개정안 청렴계약서 세부 내용에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도 추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서 발주기관의 귀책이 그 사유일 경우를 제외해 줄 것도 요청했다.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까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외 신기술 개발자가 발주기관과 신기술 사용 협약 조건을 위반해 최종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포함할 것도 건의했다.

신기술 개발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기술 사용협

약조건을 위반하고 최종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지연하는 사례를 근절하자는 취지이다.

또한 발주자가 계약 주요 내용을 변경했거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에 오류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규제이므로 과징 부과 기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해 줄 것도 요청했다.

시회는 이와 함께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사람

본지는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각계의 인사를 찾아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이번호에서는 노재화 원장을 만나 전문건설업계의 현안과 생존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노재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 “전문공사 분리발주와 적정공사비 확보에 역량 집중” 전문건설업계 이익을 합리적으로 대변하는 연구원 지향



**연구원의 역점사업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연구원은 그동안 첫째, 전문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찾아 대응방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둘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시장성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 성과로 연구원이 제안한 다수의 정책대안이 지난해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에서 채택되었고, 새 정부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1호 법안으로 채택된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 선제적으로 거둔 성과입니다.

또한 공제조합이 출시할 각종 상품을 설계하고 타당성을 분석하는 한편 위험관리시스템을 진단하고 개선하여 경영성과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전문건설업계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전문공사 분리발주와 적정공사비 확보에 관한 것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으로 확고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연구원은 최근 전문건설업계의 이익에 부합하면서도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가진 보고서를 발표, 호응을 얻었습니다.

적정공사비 확보는 원도급업체의 저가 하도급 유도, 공공발주자의 공사비 삭감 관행 등 각 단계에서 공사비 삭감 요인을 분석하여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에 우리 연구원이 제기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공식의제로 채택되어 태스크포스가 가동 중인 만큼 발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연구원이 전문건설업계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설립되기 이전의 건설정책 관련 연구는 종합건설업이 절대적이었고 전문건설업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거의 전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다툼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 같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전문건설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에 근거, 전문건설업계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대변하고자 역할에 충실해 왔습니다.

그동안 연구원은 각종 토론회와 세미

나를 비롯한 제도개선 활동을 적극 펼쳤으며 그 결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책당국 및 유관 학계, 전문가들의 우리 전문건설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나쁠수록 우리 연구원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이며, 저는 우리 연구원이 이러한 중요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문건설업계 생존에 가장 절실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몇 가지 꼽아주신다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적용대상 정부공사의 기준을 대폭 내려서 활성화한다면 전문건설업체들의 물량 확보와 불공정거래 시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대형종합건설업체들의 구조조정에서 하도급사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관리의 경우 하도급대금은 지급받을 수 없고 노임이나 자재대금은 지급해야 하는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체가 법정관리를 받는 경우에 하도급업체들이 노임이라도 변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원도급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이면에는 임의로 작성한 하도급계약서가 존재합니다. 사적계약이다 보니 다소 불공정한 계약이라도 소송으로 다투면 민사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발주 공사만이라도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상생협력 정책 방안을 제시하신다면.**

상생협력은 지난 정부의 핵심의제였고, 새로 출범한 정부도 경제민주화를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어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상생협력 분위기 속에서 전문건설업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제도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관계는 여전히 불평등합니다. 한 단계 성숙한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합니다. 원·하도급 관계를 상호이익의 관

점에서 동반자 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상호협력·동반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진정한 상생협력 이 가능할 것입니다.

**부산시회의 활동상을 평가하신다면.**

코스카 부산시회는 임직원들이 회원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회원사 간의 결속력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회가 지난해 81억원 규모의 발주물량을 전문공사로 시정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를 확대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시회 임·직원과 회원사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며 우리 연구원에서도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문건설업계 발전방안을 조언하신다면.**

대다수 전문건설업체들이 물량부족과 저가공사로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현금이나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주에 대한 부담이 크겠지만 사전에 타당성을 잘 검토하여 수익성이 부족한 공사는 맡지 않아야 합니다. 보수적인 경영전략과 판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높은 수준의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체가 수주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업체의 특성을 잘 분석하여 가격경쟁력을 지향해야 할지 아니면 고부가가치 기술 중심의 비즈니스를 해야 할지에 관한 큰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망분야를 잘 탐색하여 집중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녹색건설, 물산업, 신재생에너지, 건설 IT는 따로 주인이 있는 분야가 아니므로 이들 영역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개발하여 선점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그린홈, 녹색도로, 수처리 분야는 노력 여하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들의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건설기계 대여계약, 대금지급·계약이행 상호보증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 3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재입법예고했다.

국토부의 이번 재입법예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시행으로 인한 전문건설업계의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은 건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공공·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건설공사가 그 대상

이며 건설기계 대여 계약기간이 4개월 이하이면 계약상 선급금액을 제외한 대여금액 전액을, 계약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면 4개월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금액으로 한다.

또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나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을 때는 보증이 면제된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방지를 통해 건설산업 내 약자 계층인 영세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됐으며 지난 2월 국토교통부도 건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보증책임이 과도하고 보증부담이 전문건설업계에 집중되는 문제점에 대해 전문건설업계의 개선 건의가 잇따르자 국토부도 전문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설기계대여 계약이행보증제를 함께 도입하는 것으로 제도를 손질해 건설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 것이다.

코스카 부산시회는 이에 대해 계약이행보증의 임의 사항인데다 보증책임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높은 보증리스크로 인한 보증수수료 및 보증지급금 부담 역시 전문건설업계가 떠안아야 하는 만큼 제도시행으로 인한 업계의 애로를 우려했다.